

## 【 8 】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	제출연월일	2007. 8. .
		제 출 자	양 주 시 장

### □ 제정이유

- 양주시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 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####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

#### 나. 운영지원 (안 제3조)

-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표창수여
- 불우회원 발굴 및 유가족 위문격려
-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다. 예산의 지원 (안 제4조)

-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

##### 보조금을 지원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재향군인회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# 라. 예산의 지원 신청 및 준용 (안 제5조 및 제6조)

-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
-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함

### 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양주시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 (운영지원)** 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
2. 불우회원 발굴 및 유가족 위문격려
3.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4조 (예산의 지원)** ①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3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4.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 (지원신청 등) 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 
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  
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제6조 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  
항은 「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